

2020년 11월 16일 발행인·편집인 : 이용섭·김용승 발행처 : (우)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111 (치평동) 전화 (062) 613-6343 팩스 (062)613-6219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130호

광주광역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 청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유료로 전환함에 따라 제명을 「광주광역시청사 부설주차장 및 임시주차장 관리규정」으로 변경하고 주차요금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부설주차장 및 임시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부설주차장, 임시주차장, 정기주차 등)
- 주차장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안 제3조 ~ 제4조)
 - 주차장은 24시간 운영하되 유료 운영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평일 야간 및 공휴일 무료 운영)
 - 주차요금은 민원인 기본 90분 무료 후 매 10분당 300원, 직원 월 정기주차 요금(25,000원/월)
 - 면제차량 : 1시간 30분이내의 민원인 주차차량, 시주관 행사, 회의, 교육 등 참석차량, 취재 목적의 방문 출입기자의 차량, 차량2부제 및 주 2일부제 참여차량
 - 경감차량 : 국가유공자, 장애인, 모범납세자, 전기차 등(50 ~ 100%)
- 정기주차 차량 및 주차요금의 징수환불(안 제5조 및 제6조)
 - 정기주차는 본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입주업체 직원 등 상시근무자
 - 정기주차 차량은 매월 20일까지 요금을 선납하고 이용하지 않을 경우 환불
- 손해배상 및 이용자 준수사항 등 (안 제8조 및 제9조)
 - 주차장 안에서 시설물 및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 배상
 - 주차장에서 증명할 수 없는 피해발생은 민법의 규정에 따름
 -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주차장이 만차된 경우 등
 - 차량 내 귀중품의 보관 금지
- 주차제한 등 (안 제10조)
 -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이용이 부적합한 경우
 -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하거나 상행위를 하는 차량
 -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한 상행위를 한 경우
 - 주차장이 만차된 경우 및 차량부제의 당일 운행제한 차량 등
- 감독 등 (안 제11조)
 - 시장은 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및 관리

3. 의견 제출

이 예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청(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나. 설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by7998@korea.kr
2)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2층 회계과
3) 팩스 : 062-613-3119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회계과(☎062-613-319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 입법예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광주광역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전부개정안 1부. 끝.

광주광역시 예규 제 호

광주광역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전부개정안

광주광역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광역시청사 부설주차장 및 임시주차장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 및 임시주차장의 주차요금과 그 밖의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광주광역시청사에 설치된 지상 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을 말한다.
 2. “임시주차장”이라 함은 광주광역시 치평동 1200-2번지 임시공영주차장을 말한다.
 3. “정기주차”라 함은 시청사 안의 상시근무자(소속 직원 및 입주업체 직원 등)가 주차장 사용을 위해 정기 등록하여 이용하는 주차를 말한다.
 4. “입주업체”라 함은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청사 안에 입주된 업체를 말한다.
 5. “관리자”라 함은 광주광역시시장으로부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는 자를 말한다.
 6. “주 2일부제”라 함은 차량 5부제에 참여하는 차량이 주 1일을 추가하여 부제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주차장의 운영) ① 주차장은 24시간 운영하되, 주차요금 유료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 및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주차요금의 유료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과 유료 운영시간대를 제외한 평일 야간은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한다. 다만, 대규모 행사 또는 기타 사유로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료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사방호, 공공시설의 관리, 공사, 보안, 행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 ① 주차요금은 아래와 같이 한다.

1일 주차요금			월 정기주차요금
기본(최초 90분이내)	기본초과 매 10분당	1일 최대요금	
무료	300원	8,000원	25,000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
2. 1시간 30분 이내의 민원인 주차차량
3. 시 주관 행사, 회의, 교육 등에 참석한 자의 차량(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상시 근무자로 차량 2부제 또는 주 2일부제 참여 차량
5. 취제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자의 차량
6. 시청사 공사차량
7. 재난재해 또는 긴급상황 등의 업무지원을 위한 차량
8.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소지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경감액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둘 이상의 주차요금 경감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 경감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70퍼센트를 경감한다.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상이 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자
 -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 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마. 「광주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로서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차량은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경감한다.
3.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제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성실납세증교부일로부터 1년간 100퍼센트 경감한다.
4.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행복카드 소지자(비사업용 차량으로 한정한다)에게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저공해 자동차표지가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6.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7.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카드 소지자에게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8.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으로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제5조(정기주차 등) ① 정기주차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기주차 신청서를 제출하여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주차요금은 월 정기

주차 정액요금을 적용한다.

② 정기주차 대상자는 시청사 안의 상시근무자(소속 직원 및 임주업체 직원 등)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며, 차량 2부제 또는 주 2일부제에 참여하려는 차량은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 2부제(주 2일부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차면수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정기주차 등록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주차관리부서장은 제1항의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기주차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환불) ①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한 차량이 주차장을 나갈 때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정기주차 차량은 매월 20일까지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전출, 퇴직 등의 사유로 주차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정기주차 요금 환불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 금액은 당월 기준의 잔여일수로 계산한다.

제7조(징수된 요금의 관리) ① 주차장 관리자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일일결산하고, 다음날 시 금고 업무 마감시각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주차요금 관리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규칙」을 따른다.

제8조(손해배상 등의 책임) ①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안에서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주차장에서 증명할 수 없는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소재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주차 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3. 차량 내에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한다.

제10조(주차 제한 등)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 제한 및 차량의 이동을 요청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의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주차하려는 차량에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한 상행위를 한 경우
4. 행사회의 등으로 주차장이 만차된 경우
5. 시에서 시행하는 부제운행 해당 차량
6. 그 밖에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감독 등)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차장 시설 및 관리상황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470호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10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종합건설본부 토목1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 11. 16.

광 주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북구 용두동 및 대촌동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10호선)사업

나. 명 칭 : 광주 R&D특구 연결도로

3. 사업규모(변경없음)

노 선 명	총 규 모	금회시행	비 고
대로2-10호선	B=30m, L=4,198m	B=30m, L=750m	건고 24 ' 75.2.18.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차평동)

나. 성 명 :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5. 사업시행기간(변경)

가. 당 초 : 2016. 5. 2.(착공일) ~ 2020. 4. 30.(준공예정일)

나. 변 경 : 2016. 5. 2.(착공일) ~ 2021. 2. 28.(준공예정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등 관련조서(변경없음) : 생략(2017-184호고시문 참조)

광주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108호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20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시행령 제96조 및 같은 법 제88조와 시행령 제 9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 11. 16.

광 주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80-4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1-20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 : 도로개설(L=152m, B=10.0m)

4.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성명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99번길 6

○ 성 명 : 금화건설(주) 대표 김유석

5. 사업시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2. 9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주소, 성명 등의 세목조서(붙임 1)

7. 관계도서는 우리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tel. 062-360-7445)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권면적(㎡)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화정동	180-45	담	45	45	광주광역시 서구				
2	화정동	180-22	담	167	39	주식회사 파*새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34-1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85 (을지로1가)	근저당
3	화정동	180-60	담	145	145	광주광역시 서구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	지상권
4	화정동	180-21	담	609	107	주식회사 파*새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34-1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	근저당
5	화정동	180-57	담	231	231	광주광역시 서구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	지상권
6	화정동	180-20	담	781	123	입*자(1/3) 조*준(1/3) 조*원(1/3)	광주광역시 남구 경열로76번 안길 *호*동124번길 *호*원(1/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			
7	화정동	179-22	담	1,577	1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8	화정동	179-38	담	582	582	광주광역시 서구				
9	화정동	179-70	도	269	269	금화건설(주)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250			

[지장물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단위 수 량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화정동	180-24	담장	6×0.2×1H	㎡	0.64	조*성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면 사창길 *~*	
		헨스	6×1.3H	개소	1				
		간판기둥	0.1×0.1×3.5H	개소	2				
		간판	6×2×0.1T	개소	1				
2	화정동	180-41	경계석	37×0.2×0.2T	㎡	6.6	김*웅	전라남도 순천시 왕궁길 79 현대아파트 ***동 ***호	
3	화정동	178-25	대문의벽	0.85×0.85×3H	개소	2	중**그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_**	
		담장	4.5×0.5×1.5H	㎡	1.41				

광주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0-104호

광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09-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변경 승인됨(남구고시 제2020-97호, 2020.10.29.)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법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과 및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 11. 16.

광 주 광 역 시 남 구 청 장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	주월동 골드클래스 주상복합아파트	남구 주월동 1209-1번지 일원	17,779	증)88	17,867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m ²)	결정(변경)사유
변경	남구 주월동 1209-1번지 일원	17,779㎡ → 17,867㎡, 증)88㎡	·소로1-93호선 선형 변경에 따른 지구단 위계획구역 면적변경

나.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7,779	증)88	17,867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6,593	-	6,593	36.9	
일반상업지역	10,519	-	10,519	58.9	
자연녹지지역	667	증)88	755	4.2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위 치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용도지역	면적(m ²)	
-	남구 주월동 1209-1번지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6,593㎡	·소로1-93호선 선형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변경
		일반상업지역	10,519㎡	
		자연녹지지역	667㎡ → 755㎡, 증)88㎡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1) 경관지구

구분	도면 번호	지구명	지구 세분	위 치	면적(m ²)	연장(m)	폭원(m)	비 고
기정	13	서문로	시가지 경관지구	14호광장 ~ 32 호광장	61,490	2,365	양측13	광고156 *91.11.11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기정	대로	1	5	35~ 38	주간선 도로	7,709	백운동 14호광장	광주시 행정구역	일반 도로	건고24 *75.2.18
기정	소로	1	93	10	국지 도로	204	주월동 1203-6도	주월동 1205-11전	일반 도로	건고72 *75.8.7
변경	소로	1	93	10~ 12	국지 도로	204 (49)	주월동 1203-6도	주월동 1205-11전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403	6	국지 도로	63	주월동 1205-54전	주월동 1307도	일반 도로	남구고시 62 *17.10.24
기정	소로 (보)	3	3	3	특수 도로	138	주월동 1306도	주월동 1307도	보행자 전용도로	남구고시 62 *17.10.24

()는 사업구역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소로 1-93호선	소로 1-93호선	·노선 선형 및 면적 변경 - 면적 : 2,146㎡ → 2,234㎡, 증)88㎡ - B=10m → 10-12m, L=49m	·일부구간 도로폭원 확장에 따른 선형 변경

라. 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 번호	지구 번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14,395	-	14,395	
	공동 1	남구 주월동 1209-1번지 일원	9,429	-	9,429	아파트(주·상 복합건축물 포함) 및 부대 시설
	공동 2	남구 주월동 1207-4번지 일원	4,966	-	4,966	아파트 및 부대시설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지구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공동1	주 월 동 1209-1 일원 (일반 상업 지역)	허용 용도	·주상복합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 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 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 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미만, 주거 용 외의 용도 10%이상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의 아파트, 주택법에 의 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간선시설		
			주거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 제 14호의 업무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적률	·570% 이하		
			건폐율	·55% 이하		
			높 이	·APT : 30층 이하 ·부대복리시설 : 지상 2층 이하		
			배 치	·주민커뮤니티 공간 및 채광 등을 고려하여 배치 ·단지내 동서측 바람길 및 통풍확 보		
			형 태	·지붕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도록 조형적 형태의 지붕 계획 ·담장 : 가로경관 향상 위하여 높이 1.2m이하 생울타리 담장 및 투시형 담장 계획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		
			공동2	주 월 동 1207-4 일원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허용 용도	·주택법에 의한 APT 및 부대 복리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적률	·220% 이하					
건폐율	·25% 이하					
높 이	·APT : 26층 이하 ·부대복리시설 : 지상 2층 이하					
배 치	·주민 커뮤니티 공간 및 바람길 확보, 채광 고려 배치					

광주광역시 남구 고시 제 2020-106호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5차)

1. 광주광역시남구 고시 제2019-7호(2019. 2. 8.)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광
주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확정측량결과 편입 토지 면적 정정
및 누락된 기부채납 토지 반영 등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20. 11. 16.

광 주 광 역 시 남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광주 남구 송하동 124-7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 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

가. 도로결정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유형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217	10-12	국지 도로	74	중외-89	동림동 207-1전	일반 도로	
변경	중로	3	229	14	국지 도로	79	중외-89	동림동 207-1전	일반 도로	대량 로제비양

나. 결정 사유서

구분	결정노선	결정 내용	결정 사유
기정	소로1-217	• 폭원 변경(확장) - 폭원: 10~12m → 14m - 면적: 1,103㎡(중 144㎡)	• 공인 및 공동주택지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 노선 신설
변경	중로3-229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 계제생략

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206호

광주북구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북구청 도시생성과(☎062-410-6728)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면 북구청 홈페이지 열람 가능)

2020. 11. 16.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실효 조서

1)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유형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288	삼각동 대3-7 168-3도	삼각동 153-1 도로	일반 도로	광고69, 2006. 4. 28	
변경	소로	1	1	10	국지 도로	288	삼각동 대3-7 168-3도	삼각동 153-1 도로	일반 도로	광고69, 2006. 4. 28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실효(변경)사유
소로1-1	소로1-1	• 노선조정(선형변경)	• 현행도로 및 도시계획선 간 불일치 선형 조정(가각부)

나. 광주도시관리계획 결정(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계제생략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20-221호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 평동1-20호선 등 3개노선)사업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 11. 16.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옥동 483-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광주도시계획도로(소로 평동 1-20호선 등 3개노선) 개설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사업 시행면적 : 도로 1,545㎡
- 사업의 규모

노선명	연장 (m)	폭원 (m)	시 점	종 점	금 회 시 행			비고
					연장(m)	시 점	종 점	
평동 소로 1-20호선	137	10	옥동 552-3	옥동 490-4	137	옥동 552-3	옥동 483-6	일반 도로
평동 소로 2-82호선	82	8	옥동 483-6	옥동 491-4	14	옥동 483-6	옥동 491-4	일반 도로
평동 소로 3-5호선	139	4-8	옥동 490-2	옥동 445	12.7	옥동 489-2	옥동 491-2	일반 도로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법인의 명칭 및 주소
 - 주식회사 광신주택/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47번길23 (농성동)
-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이길행/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47번길23 (농성동)

5. 사업의 착수에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에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2. 12.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내역

- 토지조사

연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소로 평동1-20호선										
1	광산구 옥동	483-6	전	1,959.0	16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1147번길 23(농성동)	(주)광신주택			
2	광산구 옥동	491-4	대	128.0	102.0	전남 함평군 월야면 배야길 88-200 전남 함평군 월야면 의지길 42	김영민	정연철		
3	광산구 옥동	547-1	대	615.0	1.0	전남 화순군 북면 사유길 22-5	정진봉			
4	광산구 옥동	548-1	전	777.0	293.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1147번길 23(농성동)	(주)광신주택			
5	광산구 옥동	549	담	692.0	285.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1147번길 23(농성동)	(주)광신주택			
6	광산구 옥동	550-1	전	298.0	251.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1147번길 23(농성동)	(주)광신주택			
7	광산구 옥동	551-10	전	3.0	3.0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실로 26, 102-1201(노대동, 전월지구남양휴관)	김상관	광주광역시 남구 남대로 169 (주월동)	남광주농협동조 합	근저당
8	광산구 옥동	552-2	담	443.0	158.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04-4 화이트빌 비동 1층	서금희			
9	광산구 옥동	552-3	도	93.0	27.0		광산구			
10	광산구 옥동	552-4	도	112.0	34.0		광산구			
11	광산구 옥동	553	담	1,953.0	49.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1147번길 23(농성동)	(주)광신주택			
12	광산구 옥동	553-3	담	110.0	25.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1147번길 23(농성동)	(주)광신주택			
소계				7,183.0	1,395.0					
■ 소로 평동2-82호선										
1	광산구 옥동	483-6	전	1,959.0	79.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1147번길 23(농성동)	(주)광신주택			
2	광산구 옥동	491-4	대	128.0	26.0	전남 함평군 월야면 배야길 88-200 전남 함평군 월야면 의지길 42	김영민	정연철		
13	광산구 옥동	491-2	도	69.0	8.0	광주 광산구 옥동 492-1	김재욱			

연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계			2,156.0	113.0					
■ 소로 평동3-5호선										
1	광산구 옥동	483-6	전	1,959.0	12.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1147번길 23(농성동)	㈜광신주택			
14	광산구 옥동	490-2	도	23.0	19.0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927-2 묘아타워 101-305	김기조			
15	광산구 옥동	489-2	도	179.0	6.0	광산군 평동면 옥동리 486	김재병			
	소계			2,161.0	37.0					
	계			7,454.0	1,545.0					

7. 국토계획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관리청 >

0 도로

노선명	연장 (m)	폭원 (m)	시점	종점	금회시행			비고
					연장(m)	시점	종점	
평동 소로 1-20호선	137	10	옥동 552-3	옥동 490-4	137	옥동 552-3	옥동 483-6	일반 도로
평동 소로 2-82호선	82	8	옥동 483-6	옥동 491-4	14	옥동 483-6	옥동 491-4	일반 도로
평동 소로 3-5호선	139	4-8	옥동 490-2	옥동 445	12.7	옥동 489-2	옥동 491-2	일반 도로